

박사과정 시간제 학생 운영 세칙

제정 1992. 6. 9

개정 1998. 3. 1

개정 2020. 6.17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박사과정의 시간제 학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제 학생”이라 함은 교내외 연구소 등의 기관에 재직하면서 본 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이 규정에 따라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전일제 학생”이라 함은 “시간제 학생” 이외의 대학원 학칙에 따라 재학중인 모든 학생을 말한다.

제3조(승인절차) ① 시간제 학생으로 재학하고자 하는 자는 박사과정 입학지원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와 소속기관장 추천서를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일제로 재학중인 학생이 시간제로 전환하거나 시간제로 재학중인 학생이 전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통합과정 학생은 시간제로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통합과정 4학기 이상 재학 후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간제로 신분전환할 수 있다.

제4조(학기당 취득학점) 시간제 학생은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매학기 3학점 이상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6.17.)

제5조(재학년한) 시간제 학생의 재학년한은 8년으로 한다.

제6조(박사자격시험) 시간제 학생은 입학후 3년 이내에 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2회 불합격시는 제적한다.

제7조(상주재학의무) 시간제 학생은 1년 이상을 상주재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인원의 제한) 학과별 시간제 학생의 허용인원은 각 학과 박사과정 모집인원의 1/3 이내로 한다.

제9조(조교임용 및 장학금 지급의 제한) 시간제 학생은 학생조교로 임용치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나 이 경우에도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등록금) 시간제 학생의 등록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후 3년 이내 : 등록금 전액
2. 입학 후 3년초과시 : 수업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제11조(기숙사 및 아파트입주) 시간제 학생은 기숙사 및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의무상주 재학기간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본 대학 학칙 및 대학원학칙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2년 6월 19일부터 제정하여 199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2년 4월 1일 이전부터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이 시간제로 전환할 경우 사용중인 기숙사 및 아파트는 전일제 학생과 동일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